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1. 의약품 GMP 평가 및 적합판정 관리체계 개선 등 의약품 GMP 제도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 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)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유관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아울러, 상기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대표누리집(http://www.mfds.go.kr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제개정고시 등)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제2024-87호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

주무관 정수경 사무관 정명훈 의약품품질과장 김정연 전결 2024. 12. 30.
협조자
시행 의약품품질과-6938 (2024. 12. 30.) 접수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0호 의약품품질과 / www.mfds.go.kr
전화번호 043-719-2766 팩스번호 043-719-2750 / myrthen@korea.kr / 대국민 공개